고흥군의회 공고 제2021-25호

「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사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´22. 1. 12. 시행)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(안 제1조, 제4조)

- 목적조문: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
  → 「지방자치법」제53조·제54조·제56조
- 정례회의 안건처리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·제134조
 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·제150조

○ 정례회의 회기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함(안 제3조제2항)

○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함(안 제5조제1항)

3. **자치법규안:** 별도 붙임

4. **예고기간:**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5. **의견제출**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・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고흥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
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・구조문 대비표 1부.
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·제54조·제5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”를 “정례회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, “법 제134조”를 “법 제15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법 제127조”를 “법 제142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의회는 고흥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6조 중 “의회 회의규칙”을 “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・제45조・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・제54조・제56조----------.
제3조(정례회의 회기운영) ① (생 략) ②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 1.・2. (생 략)	제3조(정례회의 회기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정례회 ----------. ----------. 1.・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정례회의 안건처리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.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. 다	제4조(정례회의 안건처리) ① ---------- 법 제49조---------- 법 제150조----------. ② ---------- 법 제142조----------. ---

만, 행정사무감사는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.(개정 2021.3.26. 개정 2021.6.29.)	----------
제5조(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) ① 의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며,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	제5조(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)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의회는 고흥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	제6조(준용) ----------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--.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